

「장학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0. 6. 8. 개정 판 (시행 2020. 6. 1.) → 2023. 11. 6. 개정 판 (시행 2023. 9. 1.)

바뀐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95/compare?from=984&to=1476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5:17:54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사무관장)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, 장학금 재정 관리는 사 무처장이,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처장이 관장한다.〈개정 2018-11-19〉	제3조(사무관장) 장학업무 중 예산배정은 기획처장이, 장학금 재정 관리는 재 무처장이,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업무의 총괄은 학생처장이 관장한다.〈개정 2018-11-19〉
제6조(구성)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.〈개정 2018-11-19〉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(위원장), 학생부처장(서기), 교목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대외국제처장, 연구산학처장, <u>인성교육원장</u> ,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(위원장), <u>학생부처</u> 장(서기), 각 학부(과)장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3-08-28〉	제6조(구성) 장학업무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와 학생장학실행위원회를 둔다.〈개정 2018-11-19〉 ① 장학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(위원장), <u>학생복지팀장</u> (서기), 교목처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대외국제처장, 연구산학처장, <u>입학처장</u> , 재무처장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②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위원은 학생처장(위원장), <u>학생복지팀</u> 장(서기), 각 학부(과)장으로 구성한다. 〈개정 2013-08-28〉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장학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사무처장이"를 "재무처장이"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"학생부처장(서기)"를 각각 "학생복지팀장(서기)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인성교육원장"을 "입학처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